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태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60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3월 31일
발 의 자: 김태수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중, 김원태, 남궁역,
남창진, 이성배, 이효진,
허 · 훈, 황철규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-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시, 준공까지 4년 이상 소요되므로 구역 내 세입자로부터 바로 입주가능한 임대주택 수요 증가
- 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해당 사업 철거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 기대

2. 주요내용

가.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변경(안 제4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거주하던 자로서,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」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가진 세입자

제46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제7순위: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시 철거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공급 순위를 일부 확대·조정하는 행정적 절차적 변경이므로,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거나 별도로 건설하는 등 직접적인 재정지출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.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이설화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